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과제 제안

2022. 1. 10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비전선포대회 (식 순)

연번	시간	주제	세부 내용
0	14:00~15:00	관객 입장	· 관객 입장
1	15:00~15:10	행사안내	· 참석 후보 확인 후 입장 할 때 순서대로 안내 · 장내 및 줌 참가자에게 퍼포먼스 및 행사에 대해 사전안내
2	15:10~15:11	사회 및 행사소개	·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회 백기웅, 청소년정책추진단 이정현 · 행사 소개
3	15:12~15:17	내빈소개	· 주요 내빈소개
4	15:17~15:19	국민의례	· 국민의례, 묵념
5	15:19~15:24	영상	· 영상 상영
6	15:24~15:26	청소년현장낭독	· 청소년정책추진단 나홍준
7	15:26~15:32	취지문	·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장 송병국, 청소년정책추진단 조성원 ·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회 단체 대표
8	15:32~15:35	경과보고	·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회 오승근
9	15:35~15:55	아젠다 발표	· 범청소년계정책제안위원회 정건희, 유성렬, 정익중, 배정수
10		1분 스피치	· 청소년정책추진단 송우석, 유환, 배준서, 안희연, 권민지
11	15:55~16:15	대선후보연설	· 정당별 발표
12	16:15~16:20	아젠다 전달식	· 청소년정책추진단 - 김선우, 김인혜, 윤태경, 이연우, 전예은, 한동현 황유진, 박건, 박수연, 서영서
13	16:20~16:25	기념촬영	· 다같이
14	16:25~17:00	마무리 인사 및 장내 정리	-

목 차

I. 청소년 현장	1
II. 청소년정책과제 제안문	2
III.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경과보고	4
IV. 청소년정책과제 비전	5
V. 4개 영역 10대 청소년정책과제	
1.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1)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부여	7
2) 교육주체로서 청소년참여권리 보장	10
2.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3)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	14
4)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18
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22
3. 위기 청소년 ZERO화	
6)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6
7) 청소년심리정서지원강화 및 심리외상지원 제도마련	29
8)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분배-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35
4.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9)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40
10)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41
VI. 청소년 분야 주요 현황	51
VII. 범청소년계 조직 및 참여현황	52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교,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 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책임이 있다.
-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만들어간다.
-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 10. 25

청소년정책과제 제안문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일궈낸 세계 유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성장, 그리고 국제적 위상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암울해집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유물을 보고, 미래를 보려면 청소년을 보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지나친 입시경쟁의 압박과 다양하고도 공정한 성장 경험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며, 그들의 행복지수 또한 OECD 꼴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역시 제대로 함양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의무만을 강조하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마저 최근 들어서야 만 18세로 간신히 낮추어졌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선거교육마저 정치적 행위(?)라는 오명을 붙여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대전환,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 공정과 공존 사회로의 대전환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시대적 도전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장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성장경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났든 관계없이 그들의 사회출발점은 비슷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 이 시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청소년들의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힘들게 했던 코로나 19도 우리의 청소년들을 가장 큰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에 마땅히 경험해야 할 것 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 간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성장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청소년정책’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청소년정책은 ‘보이지 않는 정책’, ‘문패없는 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높은 장벽으로 둘러 쌓인 학교교육정책 때문에 여전히 무기력한 정책으로 남아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현장에서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은 생활

보호대상자 수준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세대가 결정하는 수많은 사항들은 고스란히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이 젊어져야 할 미래의 부담이자 부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권리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선거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젠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출 뿐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고자 ‘범청소년계’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청소년 분야의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인 13개 조직(학회, 협회)의 대표들이 차기정부에서 단행해야 할 청소년정책 아젠다 10개를 4개 영역에 걸쳐 발굴하였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협의를 통해 개발된 10개의 아젠다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긴급하고도 중요한 정책이며, 향후 국가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위기 사각지대 제로화, 청소년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지난 몇 개월 간 함께 동행 해주신 청소년계 학자들과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10일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일동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경과보고

연번	회의	일자	주요 내용
1	발기인모임 (대표자회의)	2021. 5.12.	대표자 상견례 모임을 통하여 추진위 구성
2	전체회의	2021. 6.02.	추천된 구성원 전체 모임(1차): 운영 방향설정 및 분과 구성
3	분과장회의	2021. 6.22.	분과장모임(이후 분과별 정책아젠다 주제 제안)
4	전체회의	2021. 6.23.	위원회 전체 모임(2차): 분과별 제안된 정책아젠다 주제 검토
5	분과장회의	2021. 7.15.	4개영역 및 10개 아젠다 기본틀 제안
6	워킹그룹회의	2021. 7.29.	아젠다 초안작업 공유 1
7	워킹그룹회의	2021. 8.17.	워킹그룹 전체중간점검 회의 2
8	워킹그룹회의	2021. 9.03.	워킹그룹 전체 중간점검 회의 3
9	워킹그룹회의	2021. 9.29.	워킹그룹 최종안 의견검토 및 각 기관단체 의견조율 회의 4
10	전체회의	2021.10.07.	전체 모임(3차)
11	대표자회의	2021.10.13.	대표자 모임 (포럼일정, 예산확보 건 등 논의)
12	워딩그룹	2021.11.13.	아젠다 워딩, 대외 청소년정책홍보방향, 향후 추진방향 제안
13	대표자회의	2021.11.17.	워딩작업 진행 사항 보고 및 정책발표회 진행실무팀 구성
14	워딩그룹	2021.11.26.	아젠다 워딩작업 마무리 후 공유
15	실행추진단 실무회의	2021.12.03.~ 2021.12.24.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준비과정 공유 및 정례회의
16	대표자회의	2021.12.22.	정책발표회 진행실무 보고 및 예산 협의
17	실행추진단 대표 4대 정당 방문	2021.12.29.	4대 정당 대선캠프 방문
18	실행추진단 실무회의	2022.1.04.	비전선포대회 진행 실무 협의(한수협 사무실)
19	대표자+실행추진단 실 무회의	2022.1.07.	정책발표회 사전 진행 설명 및 협조사항 논의
20	정책비전선포대회	2022. 1.10	오후2시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범청소년계 정책제안 발표회

* 청소년 정책추진단, 지도자 실무추진단 별도 운영

청소년정책과제 비전

비 전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영역별 제 안

1영역: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1.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부여
2. 교육주체로서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나도 사회의 구성원이다.

2영역: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3.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
4.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 학습권 강화

나도 공정한 사회에 살고 싶다.

3영역: 위기 사각지대 제로화

6.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7.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강화 및 심리외상 지원 제도마련
8.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분배-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나도 희망을 갖고 살고 싶다.

4영역: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9.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10.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나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이다.

청 소년 정책과제 제 안

[10대 청소년정책과제]

1.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부여
2. 교육주체로서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3.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
4.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6.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7. 청소년심리정서지원강화 및 심리외상지원 제도마련
8.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분배-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세지원
9.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10.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1.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 1)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부여
- 2) 교육주체로서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01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부여

<p>1. 제안배경 (필요성)</p>	<p>○ 청소년도 시민(civic Youth)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청소년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줄곧 논란의 핵심이었던 바, 일반 성인 시민과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의 가입 및 정당 활동 보장을 주장</p>
<p>2. 관련근거</p>	<p>○ 「헌법」 제21조제1항, 「청소년기본법」제2조 제2항제1호, 「정당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p>
<p>3. 주요 제안내용</p>	<p>○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정당 활동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연령상 제한을 두고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가입 여부를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의 결사 자유에 위배되는 것임. ▪ 대부분 민주 국가들이 당원 자격이나 가입 연령을 정당 자율에 맡기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정당 가입 연령이 선거연령보다 낮으며 정당 내에 별도의 청소년 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임. ▪ 「청소년기본법」상 9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p>4. 기대효과</p>	<p>○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체득하도록 해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성장을 도모</p>
<p>5. 소요예산 추계</p>	<p>○ 예상 소요예산: 법령 개정에 따른 직접적 예산 증액 없음 ○ 주무관청: 국회, 여성가족부 등</p>

1. 제안배경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인정한다는 선언적 명제는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우리사회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성장시킬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청소년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회적 비판은 줄곧 논란의 핵심이었던 바, 여기서는 일반시민과의 권리 동등성의 차원에서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의 보장을 주장하고자 한다.

- 제 정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의 정당 가입 및 활동과 선거운동 등 정치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체득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시켜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청소년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 성인시민과 마찬가지로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 이들의 참정권은 시민이 가져야 할 권리의 하나로 사·도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권리 침해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2. 관련근거

- 언론출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헌법」제21조제1항
-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제2항제1호
- 정당활동 (18세 미만 제한):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선거운동의 자유 (18세 미만 제한): 「공직선거법」 제60조 등
-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아동의 의견존중
-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건

3. 제안내용

「청소년기본법」상 9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당헌·당규 등에 따라 누구나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고 각 정당에 자율적으로 당원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 및 정당활동을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선거권이 있는 18세 청소년들도 정당가입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제 정당에 청소년들이 당원으로 가입, 활동하면서 그들이 정당 강령부터 정당 정책 등 제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학습·토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9세에 독일 연방의원으로서 활동한 안나 튀어만, 8세부터 기후환경에 관심을 가진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자유로운 청소년의 정치 참여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분

위기와 밀접하다.

정당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0대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정치단체이고 개인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시민단체·학생회 가입 등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처럼 정당 가입 또한 연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당원 자격이나 가입 연령 등은 정당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에서 당원 가입 연령이 선거 연령보다 낮고 정당 내에 별도의 청소년 조직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을 함으로써 정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 등을 체득하고 실제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도 정당 구성원의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소년기(청소년기본법 상 9세부터)부터 자유롭게 정당의 강령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도 일반 성인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서 그에 부합하는 민주의식 및 책무성을 함양하여 시민 청소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발휘
- 청소년의 민주시민성 함양 및 성장에 따른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의식 제고

5. 소요예산 추계

법령 개정에 따른 직접적 예산 증액 없음.

주무관청 및 재원: 국회, 여성가족부 등

02 교육 주체로서 청소년의 참여 권리 보장

1. 제안배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연령의 대부분이 학업 청소년이고, 이들 역시 교육의 3주체로서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지만 교사와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서 청소년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등을 주장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3.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청소년이 학업 청소년(학생)인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대표자인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을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 수요자의 권리와 책무성을 보장·강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여 자신과 관련한 일에 있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학생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체득하도록 해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성장을 도모
5. 소요예산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소요예산: 법령 개정에 따른 직접적 예산 증액 없음. ○ 주무관청: 국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1. 제안배경

청소년 연령(9세~24세) 대부분이 학업 청소년(학생)으로 교사, 학부모와 함께 교육 3주체로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 주체들에 비해 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던 초기부터 배제되었고, 일부 지역 및 개별학교 차원에서 제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동등한 참여권리가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인 시민과 동등한 권리보장 차원과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서의 청소년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등을 주장하고자 한다.

-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
-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이듬해 각 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행 법률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의 핵심주체인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법의 조항(제31조제2항)에 학생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교참여의 권리를 부여해 학교현장에서부터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관련근거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기본법」제2조(기본이념) 제2항제1호
 교육감 선거권(18세 미만 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 아동의 의견존중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건

3. 제안내용

1)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5월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사전) 투·개표 참여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교육감 선거권 역시 청소년기본법상 가능하면 하향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등에 근거하자면 16세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화는 그간 청소년과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청소년참정권 확대 운동과 그 노력의

결실이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사회가 청소년을 인식하는 것은 학생이란 위치에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당 가입과 함께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대표를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하향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 보장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과 학생 징계 시,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13년에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학교규칙에 있어서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존중 및 학생자치활동 등의 보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여 자신과 관련한 일에 있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일부 사립학교 혹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운영에 학생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4. 기대효과

- 교육 주체로서 학업 청소년의 동등한 권리 보장 및 책무성 제고
- 청소년의 민주시민성 성장에 따른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의식 제고

5. 소요예산 추계

법령 개정에 따른 직접적 예산 증액 없음.

주무관청 및 재원: 국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2.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 3)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
- 4)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03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

1. 제안배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확대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통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함으로써 수시전형 등에서 요구하는 활동 이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대학입시의 주요 자료인 학생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활동 이외에는 일체 기재를 금지하고 있음. ○ 국가가 인증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참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이므로, 대학입시 과정에서 인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적극 활용할 경우 사회양극화 감소 및 대학입시 극복·완화에 도움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생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내지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 주요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청소년성장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확대·개편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재정비 ○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정책 강화 ○ 청소년성장지원체계의 지역 기반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 운영의 주요 연계 기반으로서의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확대 ○ 지역기반 청소년성장지원 체계 제도화 ○ 지역사회 내 진로교육 참여 기반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인력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4.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빈부 격차에 따른 대학입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구현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교육여건 및 청소년활동의 지역 간 격차를 극복·완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 소요예산 추계 (추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개선 비용 : 10억원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 2억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천만원, 17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각 1천만원]

1. 제안 배경

-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대학입시에서의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확대
 - “돈을 들여 컨설팅받고 자소서 만들어야 대학에 붙는다” 등 학생 실력보다는 부모의 정보 수집력, 학교나 교사 영향이 합격여부에 크게 작용한다는 입장이 다수
 - 또한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 등의 입시 비리로 인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부적 영향에 대한 불신 확대
 -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부모 찬스’가 만연하고 ‘금수저’전형이라는 비판이 팽배
 - 사교육 영역에서 소위 진학지도라는 명목으로 ‘학종 컨설팅’, ‘입시 컨설팅’ 형태의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과 관련 학원의 경우 교습비 상한선이 있지만 입시 컨설팅과 같은 분야는 별도의 교습비 기준이 부재
 - 이와 같은 수시전형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정시전형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이마저도 강남·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수시전형 등에서 요구하는 활동 이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해 참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확보되어 있음.
 - 약 2,700여개의 인증 프로그램 기 확보
 -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음
- 또한 청소년단체활동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정부와 학교의 관심 저조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공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과의 상호연계는 필수이나, 정부·교육청·학교 등의 관심부재로 학교·지역사회내 청소년단체 및 가입단원 급감
 - 일부 교육청의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제 축소 및 교육청·학교의 단체활동 탈학교화 주장·정책 확대, 학부모 관심하락 등으로 청소년단체활동 지속 위축
- 그러나 대학입시의 주요 자료인 학생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활동 이외에는 일체 기재를 금지하고 있음.
 -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시행 2021.3.1., 교육부훈령 제365호, 2021.1.4., 일부개정)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제⑪항에 따르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입력(2021학년도 1학년은 미기재)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떠한 내용

도 입력하지 않음

- 여성가족부의 관리를 받는 공적 시설인 청소년활동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가 인증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임.
- 대학입시 과정에서 인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적극 활용할 경우 사교육에의 지나친 의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학입시의 극복이 가능함.

2.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생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내지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 제안 정책

(1) 통합적 청소년성장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를 확대 개편하여 학교교사 및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활동시설 직원 등의 이용 편의성 제고
 -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이력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을 통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 기반으로서의 기능 강화
 - 인증 프로그램의 책무성 확보 및 강화를 통한 이용자 신뢰 제고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인증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대학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정책 강화(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 점제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내 청소년단체활동 기록 활성화)
 -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단체활동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성장지원체계의 지역 기반 공고화

- 자유학기제 운영의 주요 연계 기반으로서의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확대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업하여 지역기반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제도화
 -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의 각급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형식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한 비형식 교육의 주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담당하는 체계 구축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진로교육학점제 도입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진로교육 참여 기반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근무 인력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

4. 기대 효과

- 빈부 격차에 따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차이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구현
-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위기 청소년들을 제도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활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교육여건 및 청소년활동의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5. 소요예산 추계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개선 비용 : 10억원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 2억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천만원, 17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각 1천만원)

04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1. 제안배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비대면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우리 삶은 혁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세대(MZ세대 등)의 등장은 더욱 빠른 사회변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 ○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생활 및 교육 환경 변화와 함께 기존과는 다른 세대의 등장(MZ세대, 알파세대)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필요 ○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고령화, 기후변화, 세계화 등 위험 요인에 대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청소년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2021.7.14.)
3. 주요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청소년 디지털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900여개 청소년시설 및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디지털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더불어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 양성·배치 ○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디지털 역량 인증제(Youth Digital Badge)’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취업, 창업, 협업 등을 위해 청소년기에 갖춘 역량에 대한 디지털경력화 및 활용을 위한 역량인증제도 도입
4.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디지털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을 디지털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 ○ 디지털 기반 성장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청년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험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자립 방안 제안 및 혁신적인 미래세대의 삶을 기대
5. 소요예산 추계 (추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디지털지원센터 설치(시범사업): 시도 17개소 × 5억원(운영비) ※ 2년 경과 후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전국 확대

1. 제안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비대면화와 함께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우리 삶의 전반에 혁신적,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따라 우리사회는 더욱 빠른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
 -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대면과 비대면의 생활방식이 공존하게 되고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가상공간에서의 삶도 존재하게 됨.
 -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생활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기와 기존과는 다른 세대의 등장(MZ세대, 알파세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

□ Z세대를 넘어 알파세대(Generation Alpha)로

- MZ세대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함.
- MZ세대가 PC와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는 시초가 된 세대라면 알파세대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과 디지털 세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음. 알파세대를 정의한 마크 맥크린들은 “이들이 어떤 세대보다 부유하고 고학력이며, 기술적으로 집약된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이들은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임. 현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MZ세대이지만 이들보다 한 단계 높은 디지털 문화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주목되는 세대가 바로 ‘알파세대’

출처: 경기도 뉴스 포털(2021.08.31.)

-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OECD 바닥 ‘충격’

-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바닥권을 기록. 학교에서 인터넷 정보의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도 OECD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
- 한국의 만 15살 학생(중3, 고1)들은 사기성 전자우편(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역량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피싱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덴마크·캐나다·일본·네덜란드·영국 학생들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한국은 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헝가리 등과 함께 최하위 집단으로 분류
- 한국 학생들은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에서도 최하위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평균 식별률이 47%인데, 한국 학생들은 25.6%에 그쳐 꼴찌. 이와 관련이 깊은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를 묻는 조사에서도 한국은 폴란드·이탈리아·그리스·브라질 등과 함께 평균 이하의 그룹에 속함.

출처: 한겨레(2021.05.16.)

- 학교에서 인터넷 정보의 편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비율도 OECD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필요

-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제공을 통한 공정한 성장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당연한 책무임.
- 유럽의 각 국가 및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청소년사업 기반 구축 확대
- 디지털 격차 심화로 인한 성장기회 제한 및 미디어 의존 확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확대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상대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활동하는 청소년에게도 안전한 대한민국 필요

□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두배 증가

- 2019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해봤더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수는 505명으로, 전년도보다 2배 넘게 증가. 디지털 성범죄자 증가폭이 19%였던 것을 감안하면, 범죄자 한 명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 추세. 성폭력 피해자 연령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2016년 23.6%였던 13세 미만 피해자가 2019년엔 30.8%까지 증가.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살부터 15살에서 가장 많음.

출처: EBS(2021.4.15.)

-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 확대
- 급격한 고령화, 기후변화, 세계화 등 위험 요인에 대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청소년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
-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을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에서 기록하고 공유하게 하여 자신의 역량 관리 및 미래 준비 방식에 다양성 부여

2. 관련근거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2021.7.14.)

3. 제안 정책

1) 디지털 격차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청소년 디지털지원센터' 운영

- 디지털 관련 다양한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개발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필요
- 청소년들의 디지털 환경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이버불링, 성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하며,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디지털 피해 청소년 지원과 가해 청소년 교육, 회복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 디지털 리터러시 활동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국의 900여개 청소년시설 및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디지털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더불어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리터러시 청소년 지도 전문인력’ 양성 배치

2)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디지털 역량 인증제(Youth Digital Badge)’ 도입

- 국가 시스템 안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 역량 확대
- 진학, 취업, 창업, 협업 등을 위해 청소년기에 갖춘 역량에 대한 디지털 경력화 및 활용을 위한 역량인증제도 도입
- 대학, 기업,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기로부터 준비해야 하는 미래 역량을 설계하고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의 지속발전가능성 확대

4. 기대 효과

- 디지털 기반의 성장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청년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험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자립 방안 제안 및 혁신적인 미래세대의 삶 기대
-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기의 삶의 변화와 성장에 적합한 국가 지원체계 확대로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통합의 가치 실현
- 온-오프라인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디지털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을 디지털 범죄의 대상이나 주체로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회복 지원

5. 소요예산 추계

- 청소년 디지털지원센터 설치(시범사업) : 17개소(시도별 1개소) × 5억원(운영비)
※ 2년 경과 후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전국 확대

0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1. 제안배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정상화’를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2022. 1. 6.) ○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주요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와 학교 밖의 단절,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준비의 부족 등으로 소수의 학생들만이 환경학습의 기회를 갖고 있는 실정 ○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공적체계 구축 및 환경학습권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환경교육 추진체계에 따른 환경교육 의무제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전문 인력 필요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2022. 1. 6.시행 예정) ○ 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1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3(climate action), 14(life below water), 15(life on land)
3. 주요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교육의 거점화 및 전담 환경교육사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군구 소재 230여개 청소년센터를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수준별 환경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및 학교연계 환경교육실시 ○ 공공시설인 청소년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활동의 플랫폼 구축 ○ 청소년센터를 지역사회 환경활동의 거점으로 구축 ○ 초·중·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환경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청소년센터라는 공공의 네트워크를 연결한 청소년 환경교육 및 체험학습의 체계 구축 및 실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체험중심의 환경프로그램의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환경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의 블록타임 적용을 통한 스포츠, 문화예술, 진로·직업과 환경을 융합한 청소년 주도의 활동으로 진행 ○ 청소년들의 환경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경비 지원 방안 도입
4.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생애주기 발달과업으로 윤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체득 기회 제공 ○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 생활 속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
5. 소요예산 추계 (추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사 배치지원금 및 기초환경센터 운영비 (230개소 X 각 5억= 1,150억원)

1. 제안 배경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정상화’를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022. 1. 6.)
 - 아울러 국립청소년환경센터의 건립 추진(2022년 예정)으로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한 추진 체계 마련 예정
-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주요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와 학교 밖의 단절,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준비의 부족 등으로 소수의 학생들만이 환경학습의 기회를 갖고 있는 실정
 - 초등학교의 경우 환경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교사의 주도하에 진행
 - 전국 중·고등학교의 13% 정도가 환경과목을 선택하여 운영
- 청소년의 환경교육을 위한 공적 체계 구축 및 환경학습권 강화 필요
 - 현행 「환경교육진흥법」에는 환경교육센터를 국가와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나 광역이나 기초 수준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이 미미한 실정(2020년 기준 55개소)
 - 전국 시·군·구에 소재하는 230여개의 청소년센터를 활용하는 환경교육의 지역거점화 필요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6.)에 따라 국가 환경교육 추진 체계에 따른 환경교육 의무제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전문인력 필요
 -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 부재
 - 청소년센터를 지역사회 환경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환경교육사들의 청소년센터 배치 필요

2. 관련 근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2022. 1. 6.시행예정)
- 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1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3(climate action), 14(life below water), 15(life on land)

3. 제안 정책

1)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교육의 거점화 및 전담 환경교육사의 배치

- 전국 시·군·구 소재 230여개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수준별 환경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및 학교연계 환경교육 실시
- 공공시설인 청소년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활동의 플랫폼 구축
 - 청소년활동 분야와 환경 분야를 융합한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
 -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공유 및 교류의 기회 확대
- 청소년센터를 지역사회 환경활동의 거점으로 구축
 - 청소년지도사들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

- 환경교육사들의 청소년센터로의 배치 의무화

2) 초·중·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환경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지원

-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 및 체험활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나,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체험중심의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예) 대만의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의무 환경교육 제도”
 - 교사와 학생들은 매년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 초·중고에서는 법 시행 5년 내에 소속 직원 중 1인 이상이 환경교육 보급인력 인증을 취득하도록 의무화
- 환경교육은 교과중심이나 책임교육 형태가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의 블록타임 적용을 통한 스포츠, 문화예술, 진로·직업과 환경을 융합한 청소년 주도의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국가환경교육센터와 청소년센터라는 공공의 네트워크를 연결한 청소년 환경교육 및 체험학습의 체계 구축 및 실행 지원
 - 예) 미국의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NEEF(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Foundation, 국가환경교육재단)
- 청소년들의 환경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경비 지원 방안 도입
 - 평생학습바우처나 스포츠바우처 등의 형태 활용 가능

4. 기대효과

- 청소년이 생애주기 발달과업으로 윤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체득 기회 제공
-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 생활 속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5. 소요예산 추계

- 환경교육사 배치지원금 및 기초환경센터 운영비 : 230개소 X 5억 = 1,150억원



3. 위기 청소년 ZERO화

- 6)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7) 청소년심리정서지원강화 및 심리외상지원 제도 마련**
- 8)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분배-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06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 제안배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은 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분리 추진되어, 전달체계(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vs 아동권리보장원)는 물론 정보시스템까지 별도로 구축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vs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하고 있어 예산이 중복 지출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등은 아동복지시설 등 타 부처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어려움 ○ 만19~24세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정부의 행정력 낭비 ○ 여성가족부는 향후 3년간 16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공급자 중심의 아동·청소년 정보시스템 이원화는 분절성과 수요자 간 서비스 격차 가속화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05) 및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2020.05) 등 개별 발표 ○ 청소년복지시설 전문가포럼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2021.05) - 보호 대상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3. 주요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만18세 이하)과 청소년(만9~24세)은 연령이 겹치므로, 아동과 청소년 복지 사업의 부처, 전달체계, 정보시스템 통합 ○ 지역사회 차원에서 만19~24세 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하는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을 통합해 ‘아동청소년 자립전문기관(가칭)’ 운영 ○ 기 구축된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e아동청소년 행복지원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기능을 보완 ○ 현재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 발굴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후 청소년 위기 발굴 기능을 추가하고,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안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가능. 공무원 및 현장 종사자가 가정방문 시 은둔형 외톨이나 가출청소년 등 거취 및 위기 여부 확인하고 인공지능이 제안한 연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아동·청소년 구분없이 누구나 보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립 준비 ○ 부처와 전달체계에 따라 별도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차별 지원의 문제가 해소되고, 중복 예산이 절감되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됨
5. 소요예산 추계 (추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절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비 161억3천만원 절감 ○ 주무관청 및 재원: 여성가족부

1. 제안 배경

□ 분절된 아동·청소년지원정책 추진

- 아동·청소년 정책은 법정 연령이 일부 중첩됨에도 주무부처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분리 추진되어 전달체계(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는 물론 정보시스템까지 별도로 구축하고 있음.
- 분절된 정책 추진체계는 통합적 사례관리 미흡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의 비연속성이 발생함. 특히 청소년복지시설 등은 아동복지시설 등 타 부처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어려우며 각 부처 간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아동·청소년 정보시스템 이원화는 분절성과 수요자 간 서비스 격차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실례로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 연계 부족
- 만 19~24세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정부의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틀을 넘어,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설정 필요

2. 관련 근거

-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05) 및 ‘포용국가 청소년정책’(2020.05) 등 개별 발표
- 청소년복지시설 전문가포럼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2021.05)
 - 보호 대상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3. 제안 정책

(1)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기존 구축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e아동청소년행복지원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기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기능 보완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① 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② 치료중단 등 병원기록 ③ 아동복지시설 퇴소 ④ 학교밖 청소년 ⑤ 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 43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학대 위험아동을 예측하고 조기 발견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 발굴 기능에 초점이 맞춰있는데 이후 청소년 위기 발굴로 확대하고,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안에 초점 맞추고 인공지능(AI) 기반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가능. 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 청소년 위기 가능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필요 서비스와 연계 가능기관을 제안함.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시 은둔형 외톨이나 가출청소년 등 거취 및 위기 여부 확인하고 인공지능이 제안한 연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청소년안전망의 기능인 '위기청소년 발굴 → 보호·상담 → 학업·자립지원 등 개입'은 기 기관을 통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지원이 이후 기록으로 계속 쌓여 위기청소년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고도화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 통합적 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자립전문기관' 운영

-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만19~24세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하는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능을 통합해 '아동청소년자립전문기관' 운영.
- 수요자 입장에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처·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협의제도 마련 필요

4. 기대 효과

-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아동·청소년 구분없이 누구나 보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립 준비
- 부처와 전달체계에 따라 별도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차별 지원의 문제가 해소되고, 중복 예산이 절감되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됨

5. 소요예산 추계

- 예산 절감예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비 16,130백만원 절감

07 청소년심리정서지원강화 및 심리외상지원 제도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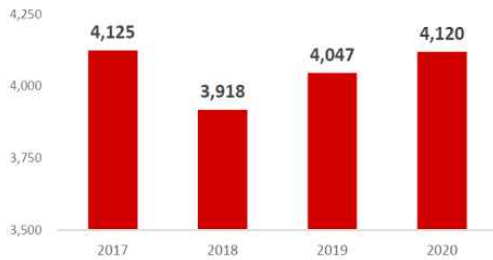
1. 제안배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학대, 학교폭력, 가출 등 청소년 위기도는 날로 급증하는데 반해 위기청소년지원체계는 최소한의 기관 설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의 청소년 위기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열악한 청소년상담 및 복지 환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설치기준 미비로 인해 단독건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잦은 이사, 타 기관 입주로 인한 내담자 비밀보장의 어려움 등으로 청소년들의 상담센터 접근에 어려움을 야기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부재) 학교밖청소년센터가 타 기관과 함께 사용 하고 있어 공간사용 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편견 등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와「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3. 주요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대한 제도와 체계 마련 ○ 청소년 심리상담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자해 방지체계 강화 : 고위기 청소년 전담 상담안전망 구축 ○거점별 청소년 정서·행동 치료재활센터 증설(현행 전국 2개소 운영) ○청소년 인구수 대비 독립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설(현행 지자체별 1개소 운영) ○ 청소년의 안전한 상담,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맞춤형 심리상담지원을 위한 안전한 상담환경 및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센터 복합시설로 확대 개편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쉼터 공간 마련 ○청소년 상담,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지원기관의 독립 공간 확보를 통해 안전한 심리정서지원 및 보호 환경 마련 ○ 심리정서 지원 기관 확대로 청소년 심리상담권 보장 ○ 적극적 심리적 개입을 통한 위기청소년 선제적 예방 및 조기 발견 ○ 위기청소년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5. 소요예산 추계 (추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소요예산: 4,200억원 ○내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센터 복합시설 설치비(국비 지방비 매칭) 30억원 × 20개소 = 600억원(순차적 설치로 최초 설치 개소는 전체 10%이내) ○내역: 쉼터 설치비(국비, 연 임차료) 10백만원 × 360곳 = 3,600백만원 ○ 주무관청 및 재원: 여성가족부

1. 제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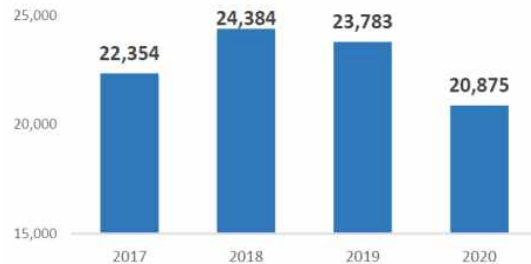
□ 자살, 학대, 학교폭력, 가출 등 위기 사각지대 청소년 증가

○ (청소년 위기사각지대 심각) 9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위기대상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은 대략 9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청소년 인구의 13.7%에 해당.

- 중위소득 50%의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10명 1명에 해당됨.
- 유기·학대·빈곤 등으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보호 대상 아동은 매년 약 4천여 명, 가정 밖 청소년은 약 2만 명 이상 발생. 중고등학생 100명 중 12명이 1회 이상 가출을 경험



< 보호대상아동 현황 ('20, 복지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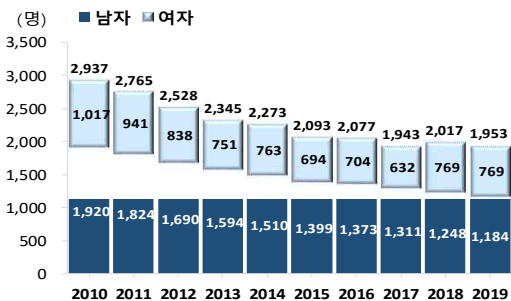


< 9~19세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 ('20, 경찰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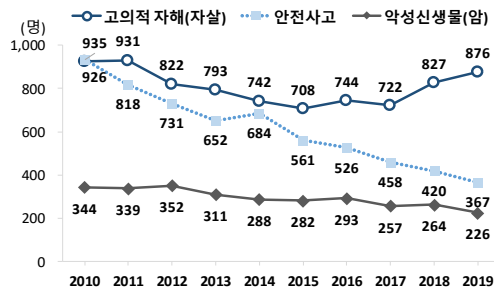
- 100명 중 5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 매년 6~7만여 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전체 범죄자 100명 중 4명이 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국가의 지원을 모두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 존재

○ (청소년 자해·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 심각)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는 자살(고의적 자해)로, 특히 최근 자해 청소년 급증하고 있음.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대 37.5%, 20대 51%, 30대 39%임(자살예방백서, 2021).

<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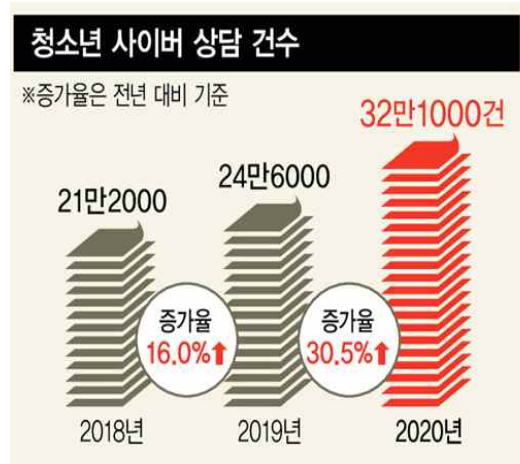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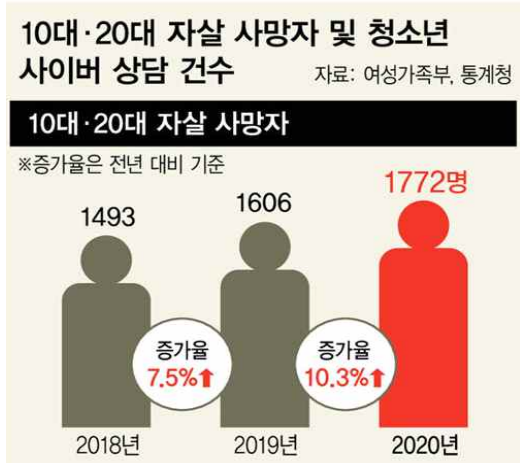
<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



-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0년 1만3018명으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10·20대는 10.3%로 증가하여 전체 자살 비중의 10·20대가 차지하는 자살사망 비율은 2019년 11.6%에서 2020년 13.6%로 2%포인트 증가
- 청소년 정신건강 사이버상담도 78.6% 증가하였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청소년

이 겪는 주된 감정으로 불안·걱정이 53.2%로 가장 컸고, 짜증(39.3%), 우울(30.2%), 두려움(18.5%)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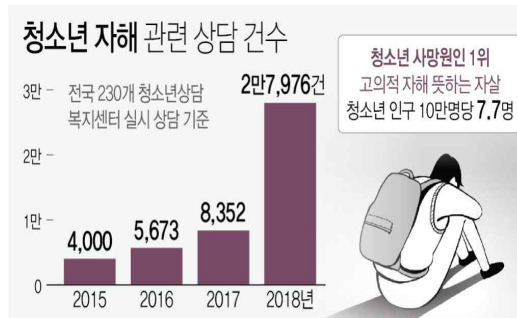
- 반대로 감사(4.8%)·평온(4.4%)·관심(3.6%) 등 긍정적 감정을 느낀다는 청소년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 비자살적 자해가 급증하며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감을 증가시키고 있고, 청소년 사이에서 자해 인증샷, 자해 자살송 등이 유행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하나의 대처 양식으로 비자살적 자해가 증가하고 있어 심리건강의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음.
- 자해행동은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자살적 의도는 없으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찾기 전에 지속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큼.
- 자해의 발병 시기는 초기 청소년인 12~13세로 청소년의 위기가 저연령화되고 있음.

〈연도별 자살 학생 중 자해·자살시도(1년 이내) 여부 현황(2016-2019)〉

구분	2016	2017	2018	2019
자해시도	3.2%(3건)	5.0%(5건)	15%(18건)	23.9%(27건)
자살시도	6.8%(6건)	5.0%(5건)	5%(6건)	14%(14건)



○(대규모 재난 발생 관련 불특정 다수의 집단 트라우마 발생 증가) 코로나19 감염증-19 대유행(2020), 강원도 산불(2019), 포항 지진(2017), 세월호 침몰(2014) 등 국가적 재난 사건으로 인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소식은 전파되고, 높은 불안·분노·슬픔 등이 공유되어,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며 자유의지가 아닌 강제적 멈춤 활동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을 자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울, 불안, 분노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 특히 스트레스 대처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심리적 고통에 방치되거나 부정적 정서 표출 등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큼.



2. 관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와「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3. 제안 정책

(1) 청소년심리정서지원강화 및 심리외상지원 제도 마련

□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대한 제도와 체계 마련

- 현재 트라우마 관련 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본조신설 2018. 6. 12.]’이 유일함. 기존 법체계로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 체계를 구성하고, 협력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높은 파급력을 가진 청소년의 외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여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 및 시스템 마련

□ 청소년 심리상담지원체계 강화

- 고위기 대응 시스템 부재 청소년의 자살사망사건 이후 지역사회의 긴급대응은 각 기관의 분절적 대응으로 인해 통합적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 청소년 투신자살을 목격한 한 지역주민, 같은 학교 학생, 학부모, 소식을 접한 지역시민 등 한 청소년의 자살사건에 관련되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적게는 몇 백명에서 많게는 몇 천명에 이를 수 있음. 그러나 사건에 대한 대응은 학교 내 같은 반, 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질 뿐 다른 영역은 그 어떠한 것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자살사망사건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엔 모방 자살이 높은 비율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영역임. 실제 2~3주 후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자녀의 자살 위기를 호소하는 상담 전화가 발생하였음.

○심리상담지원체계 강화 분당 서현고 고등학생 실종→사망사건(2021.6.28.)처럼 학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 자살 전 고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 부재와 같이 청소년기의 발달 위기 상황에서 일상생활 중 개입할 수 있는 심리상담지원체계가 절실함. 현재 학교내 전문상담사 1인이 배치(교육부 Wee클래스)되어 있고,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개소 설치되어 있지만, 심리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시스템이 없이 문제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찾게 하는 시스템으로 일상 스트레스 상황에 상담실접근의 한계가 있음. 또한, 두 기관 모두 심리적상담지원을 해야 하는 청소년 인구수 대비 현저하게 낮은 상담사 비율로 대응하기 어려움이 큼.

○자살·자해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 고위기 전담 청소년안전망 구축

- 청소년 자살·자해 사건 발생시 지역내 긴급대응체계가동 및 컨트롤 타워 기능 확보
- 청소년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긴급대응에 관한 단일화된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 대응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단일화 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긴급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별도 조례 및 규칙 필요

○심리상담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설

- 청소년 인구 대비 상담복지센터 증설 : 현행 지자체별 1개소 운영 또는 필요에 의한 분소를 두고 있으나, 청소년 심리지원의 완결적 구조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청소년 인구수 대비 현실적인 전문상담사 배치 및 센터 증설이 필요함.

○거점별 청소년 정서·행동 치료재활센터 증설(현행 전국 2개소 운영)

- 현재 2개소(용인, 대구)가 운영 중이나 고위기청소년의 증가로 인한 전문적 생활치료 시설의 증설 필요.
- 강원, 충청, 전라권 등 권역별 시설 마련으로 심리적 위기청소년의 전문적 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청소년의 안전한 상담,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건립

○청소년 맞춤형 심리상담지원을 위한 안전한 상담환경 및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센터 복합시설로 확대 개편**

- **열악한 청소년상담 및 복지 환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설치기준 미비로 인해 단독건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잦은 이사, 타 기관 입주로 인한 내담자 비밀보장의 어려움 등으로 청소년들의 상담센터 접근에 어려움을 야기함.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해당 사업목적으로 건립된 센터가 7개소에 불과(전체 2%)

- 시설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같은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함.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 다수 발생)
-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부재** 학교밖청소년센터가 타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간사용 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편견 등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의 부재는 검정고시 교실, 직업체험 공간 등 자립활동 공간이 없어 외부 기관에 의지하거나 활동을 못하게 됨.

○가정밖청소년의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쉼터 공간 마련

- 청소년쉼터는 4~6인 1실이라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안전한 심리적, 물리적 공간 확보가 되지 못함.

○청소년 상담,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기대 효과

- 위기청소년지원기관의 독립 공간 확보를 통해 안전한 심리정서지원 및 보호 환경 마련
- 심리정서 지원 기관 확대로 청소년 심리상담권 보장
- 적극적 심리적 개입을 통한 위기청소년 선제적 예방 및 조기 발견
- 위기청소년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5. 소요예산 추계

- 예상 소요예산: 4,200억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센터 복합시설 설치비(국비 지방비 매칭)
 - 30억원 × 20개소 = 600억원(순차적 설치로 최초 설치 개소는 전체 10%이내)
 - 쉼터 설치비(국비, 연 임차료)
 - 10백만원 × 360곳 = 3,600백만원

08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분배-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 (공평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예산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제정, 2015.5.29. 시행)에 의거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 시도센터 5명 이상, 시·군·구센터 2명 이상 인력 배치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가형(4명이상)	나형(3명이상)	다형(2명이상)
239,580천원	165,633천원	125,993천원	84,517천원

○ 어느 자치구의 경우에는 매년 300명의 학교밖청소년 발생/ 전담인력 3명, 사례지원 수 300명 이상/전담인력 1인당 사례관리 수 100명
 ○ 300명의 학교밖청소년이 지원받는 1인당 예산은 419,946원

○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필요)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역량을 위한 자격증 지원은 6개월에서 1년여 동안 진행되며, 비용은 개인당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상의 한계로 소액의 자격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청소년의 진로에 맞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엔 역부족임.

2. 관련근거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에 의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3. 주요제안 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공평한 교육경비 지원(9세~24세)**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경비 보조 : 교육수당 및 자립수당의 현실화
- 학교밖청소년 지원액 현실화 : 1인당 지원액 증가 필요
- 학교밖청소년 지원 인력의 현실화 : 꿈드림센터 인력 충원

○ **후기청소년 역량강화 지원체계마련(17세~24세)**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로 직업체험 및 자립활동 지원 확대
- 자퇴 후, 또는 고등학교 졸업고시 취득 후 유예기간에 대한 자립지원시스템 구축(영국 gap year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및 인생에 대한 고민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작업장 및 실험실(창업 lap)운영 : 진로탐색-직업체험-인턴십-취업 및 창업 등 One-Stop 자립역량체계 마련

4. 기대효과

- 고른 교육경비 분배를 통한 학교밖청소년의 권리 보장
- 현실적인 학교밖청소년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수당을 확보를 통해 자립역량 강화
- 후기청소년 One-Stop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5. 소요예산 추계 (추후작성)

○ 예상 소요예산: 1,320억원:
 6억원 × 220개소 = 1,320억원(전문인력 5명이상)

○ 주무관청 및 재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1. 제안 배경

□ 학교밖청소년의 지속적 증가와 학교밖청소년지원의 한계

○ (학업중단율의 지속적 증가) 2019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 0.7%, 중학생 0.8%, 고등학생 1.7%로 나타남. 19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0%로 전년 대비 0.1% 증가.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생 0.7%, 중학생 0.8%, 고등학생 1.7%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학업중단율은 16년 이후 증가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8년 대비 각각 0.1% 상승하였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

○ (학교밖청소년지원의 미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제정, 2015.5.29.시행)에 의거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되었으나 조직규모, 예산 등은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기엔 역부족 상태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구성은 시도센터 5명 이상, 시군구센터 2명 이상 인력 배치로 각 유형별 인력과 예산 지원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가형(4명이상)	나형(3명이상)	다형(2명이상)
239,580천원	165,633천원	125,993천원	84,517천원

- 어느 자치구의 경우에는 매년 300명의 학교밖청소년 발생/ 전담인력 3명, 사례지원 수 300명 이상/전담인력 1인당 사례관리 수 100명
- 300명의 학교밖청소년이 지원받는 1인당 예산은 419,946원
- 학교안청소년인 학생의 1인당 교육경비는 500백만원에서부터 1,000만원에 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보임(일반학교와 특성화학교에 따라 교육경비 상이: 교육플러스2021.8.15.기사)
- 학교밖청소년의 직업 및 자립 준비는 일회성 체험 위주로 진행되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에게 역부족임.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기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 운영됨으로서 별도의 공간과 운영예산 없이 시작되어 안정적인 학교밖청소년의 공간 및 인력의 부재로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한계를 지님.

2. 관련 근거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15.5.29.시행)에 의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3. 제안 정책

(1) 학교밖청소년에게 고른 교육경비 지원

-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필요)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역량을 위한 자격증 지원은 6개월에서 1년 여 동안 진행되며, 비용은 개인당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상의 한계로 소액의 자격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청소년의 진로에 맞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엔 역부족임.
-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역량 시스템 구축)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역량 증진 사업은 진로탐색, 직업체험, 진로특강, 자격증과정, 인턴십 등 다양하게 운영되지만, 각각의 자립역량 요소들이 하나의 구조 안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분절적 운영됨.
 - 학교밖청소년 개인의 욕구와 진로발달에 맞는 맞춤형, 완성형 자립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진로발달의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현실임.
-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자립 준비기 보장) 17세 이상의 후기청소년 중 상급학교의 비진학, 또는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로 검정고시 합격 후 유예기간을 갖는 청소년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유예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 정립 및 사회 적응에 대한 준비기로 다양한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자립기술 습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학교밖 청소년에게 공평한 교육경비 분배 (9세~24세)

- 학교밖 청소년에게 교육경비 보조 : 교육수당 및 자립수당의 현실화
- 학교밖 청소년 지원액 현실화 : 1인당 지원액 증가 필요
-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인력의 현실화 : 꿈드림센터 인력 충원

□ 후기청소년 역량강화 지원체계 마련 (17세~24세)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확대로 직업체험 및 자립활동 지원 확대
- 고등학력 검정고시 취득 또는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대학진학 및 사회진출 전 유예기간에 대한 자립지원시스템 구축(영국 gap year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및 인생에 대한 고민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작업장 및 실험실(창업 lap)운영 : 진로탐색-직업체험-인턴십-취업 및 창업 등 One-Stop 자립역

량체계 마련

4. 기대 효과

- 고른 교육경비 분배를 통한 학교밖청소년의 권리 보장
- 현실적인 학교밖청소년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수당을 확보를 통해 자립역량 강화
- 후기청소년 One-Stop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5. 소요예산 추계

- 내역: 6억원 × 220개소 = 1,320억원(전문인력 5명 이상)



4. 청소년정책의 공공성 강화

9)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10)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09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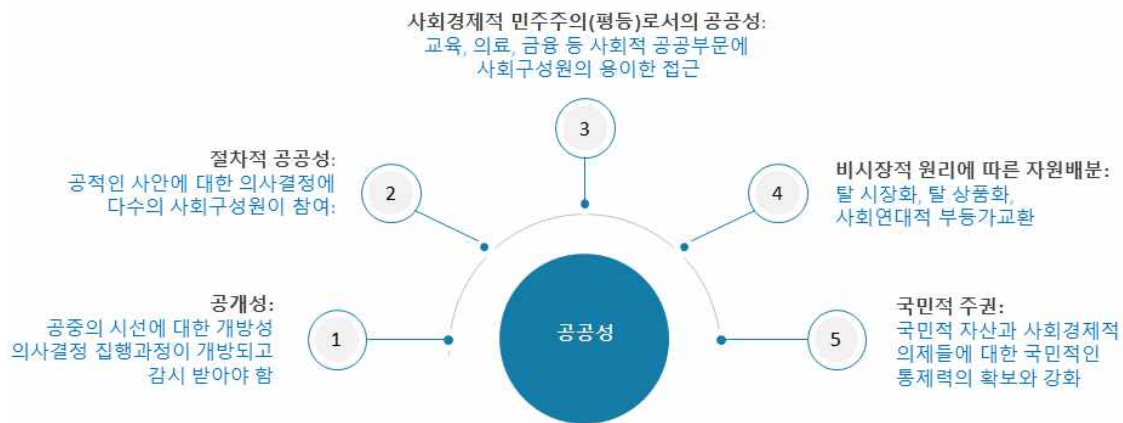
1. 제안배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와 부서는 2010년 3월 19일 당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합해 만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로, 가족정책과 통합된 청소년정책은 부처 내 잔여 정책분야로 머물러 활동, 보호, 복지, 문화, 상담, 진로, 참여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기획·조정하는 국가의 미래발전 원동력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있음. ○ 다른 OECD 국가와 같이, 현재의 시민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자 복지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으로 위치하기 위해 종합적·포괄적 정책집행 및 사업추진 체계를 재구조화할 시점임.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청소년사업법(Youth Work Act)」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각각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주도로 추진 ○ 독일은 정부 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을 명기(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하여 국가단위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공공적 책무 강화
3. 주요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필요시 아동정책까지)을 지향하는 장관급 심의의결기구와 전담부처의 신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별도 부서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국가 정책과 사업 기획·추진 - 확장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국가사업이 중첩되지 않으면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기획·조정 기능 명확화 ○ 국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청소년정책 전담에 관한 조문 명시
4.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신설로 보다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청소년정책사업 기획 및 집행 가능 ○ 현)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과 가족정책에 충실하여 본연의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5. 소요예산 추계 (추후작성)	-

10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1. 제안배경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국가 전문자격으로 청소년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개별 시설이나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법률에 의해 부여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 종사자의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실상은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나 위탁운영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역별, 시설별, 분야별 임금편차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양질의 청소년분야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관련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제 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가 2019년에 제시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표준급여 권고안
3. 주요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의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실천근거 향상을 위해 청소년 관계법 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개정 - 저조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정부예산 반영률 상승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 청소년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 확대 ○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전문가 운용체계 및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분야(활동, 보호, 복지, 상담 등) 종사자에 대한 급여 등 처우의 표준화 - 청소년지도사 처우 관련 법령의 준수 -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의 적용 의무화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
4.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분야 제 시설 및 인력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은 국가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의 내실화를 통한 효과적인 공공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임. ○ 청년은 얼마 전의 청소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적 노력의 출발점이 청소년정책의 공공성 강화라고 할 수 있음
5. 소요예산 추계 (추후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추계인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청소년기관의 연간 운영비

1. 청소년 정책에서 공공성의 함의

-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 주로 관련되는 성질”로 나타남(표준 국어대사전)
- 그러나 인문사회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성을 다루고 있음에도 공공성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임은 자명한 사실임.
- 무엇을, 어디까지를 공공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
- 신정완(2007)은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다음의 다섯 속성으로 구분함.



[그림 1] 공공성의 의미¹⁾

- 여기에서는 위의 속성 중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비시장적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을 ‘대체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합의되거나 인식된 것’, ‘정부 등 공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것’, ‘법·제도·절차 등에 그 근거가 정해진 것’으로 해석하고자 함.
- 공공성의 정의나 속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이 부상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상황이 그렇게 공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음.
- 즉, 청소년정책이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는 합의나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 등 공적 주체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과 제도, 절차에 의해 그 근거가 정해지지 않아 공공성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현상은 공공성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전개 과정과 청소년정책분야의 기형적 발전과정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봄.
- 한국적 특수한 전개 과정이라 함은 독립과 전쟁, 분단과 독재, 민주화와 경제발전 등 그야말로 역동적인 70여 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겪게 된 압축성장을 위한 속도전, 국가 주도의 수직적 근대화, 공공의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개인의 소외와 억압, 공존과 연대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부각되는 신자유주의의 부상 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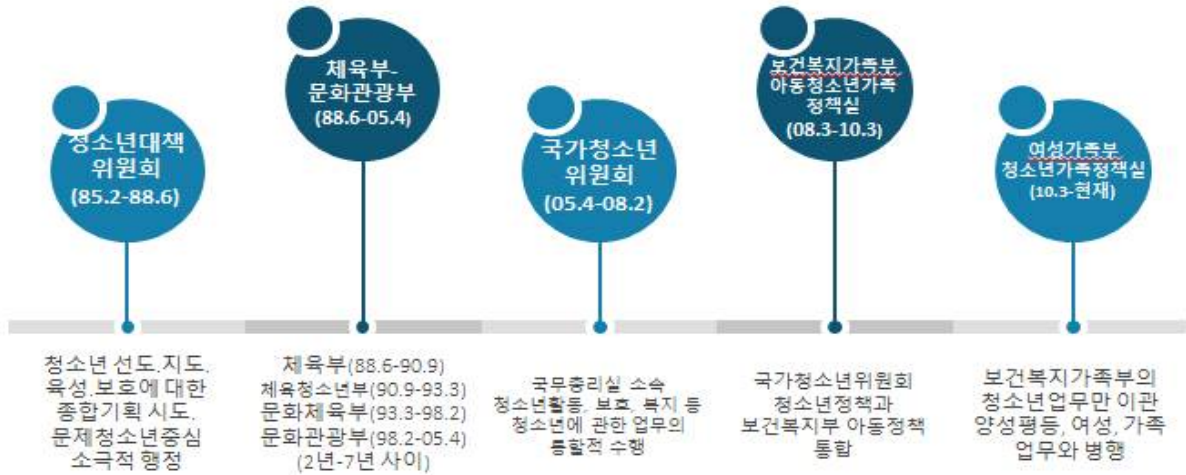
1) 신정완 (2007).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론전략. 시민과 세계, 11.

- 이 과정에서 소위 지배집단과 관료집단은 공공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공적인 것’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공공성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였고, (왜곡된)공공성을 위하여 (진정한)공공의 가치가 희생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반화되기도 함.
- 청소년분야의 기형적 발전이라 함은 경제발전의 끝자락, 민주화의 시작 시기에 교육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청소년분야와 정책이 시작되었음에도 그 책임과 역할을 국가 등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지 않고 민간에 상당부분 떠넘기면서 지내온 정책의 여정을 말하는 것임.
- 그 과정에서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정책의 한 주체인 담당부처는 수시로 이동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졌으며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고 소관 부처에 따라 강조하는 중요 정책이 변하는 상황을 만들게 됨.
- 또한 청소년관련 전달체계의 중요 요소인 청소년관련 시설과 기관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공 기관임에도 그 운영의 책임과 부담은 민간이 가지는 기형적 형태의 민간위탁이나 재단과 공단 운영 등 운영주체의 차이와 더불어 지역별 기관별로 상이한 운영체계와 급여 및 비용분담체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책임 방기, 국가가 인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청소년분야 전문가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남.
-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거시적인 거대 담론으로 흐르면 자칫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우리는 앞선 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위기 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음. 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실천은 결국 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체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가능함.
- 이러한 방향에서 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단초로서 선행되어야 할 두 가지 측면의 과제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재구축’과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국가 책임 강화’를 공공성 강화의 의제로 제안하고자 함.

2.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재구축

1) 진단

- 제시된 단어는 전달체계이지만 결국 전담부서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일 것임.
- 청소년정책의 전담부서는 1985년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설치 이래 짧게는 2년, 길게는 7-8년의 수명을 가지고 변화해 왔음.



[그림 2]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변화²⁾

- 담당부처의 잦은 이동은 필연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해당 부처의 주요 업무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 상존
- 그나마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절이 그 효과성이나 목적달성 여부를 차치하고 오로지 청소년정책에 집중한 시기였다고 평가됨.
- 현재의 시스템은 2010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합하고 여기에 청소년정책을 가져와 만들어짐.
-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가족정책실이 담당하는 청소년정책은 부처 내 잔여적 정책으로 머무는 경향이 있으며 활동, 보호, 복지, 문화, 상담, 진로, 참여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기획·조정해야 하는 국가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로서 부족함이 있음.
- 다른 OECD 선진국과 같이 현재의 주인이자 미래의 지속적 성장동력이며 복지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으로 종합적·포괄적인 청소년정책 수립·추진체계가 필요한 시점
-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과 유사하게 「청소년사업법(Youth Work Act)」을 제정하여 제도권 공교육과 비영리 공공 청소년단체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청소년사업을 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주도로 추진
- 독일은 정부 부처의 명칭에 청소년을 명기(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하여 국가 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에 대한 책무를 강화
- 핀란드는 「청소년사업법(Youth Work Act)」을 법률로 제정하여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에서 보육, 교육, 훈련/연구, 예술, 문화, 체육, 청소년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청소년사업을 추진
-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청소년의 연령(9세-24세)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대적

2)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에서 재구성

으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청년에 대한 부분임.

-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정치적으로 청년에 대한 고려와 언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별 지방 자치단체별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할 부처는 없는 실정
- 생애주기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명확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관심사와 고민이 중첩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 청사진을 만들고 실행할 부처의 존재가 필요한 실정
-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과 포용, 다양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해나가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부처”라고 설명함.
- 여성가족부의 2021년 예산을 살펴봐도 그 업무의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히 나타남.



[그림 3] 여성가족부 2021년 정책별 예산 현황3)

-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며,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설립목적에 맞는 합당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짐.
- 그러나 부처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의 방향, 부처 장관의 학문적 배경, 경험과 인식, 전문분야에 따라 소관업무의 방향, 중요성이 결정됨을 감안할 때 현재와 미래, 아동과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대상과 기한의 스펙트럼이 넓은 청소년정책의 역동성과 미래지향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 제안사항

-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필요시 아동정책까지)을 지향하는 장관급 심의의결기구와 전담부처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
- 새 정부 조직개편 시 청소년정책 전담 부처 신설 및 사업의 체계 정비
-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 별도 부서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 국가 정책과 사업 기획 필요
- 확장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국가사업이 중첩되지 않으면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기획·조정 기능 명확화
- 국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고「정부조직법」개편으로 청소년정책 전담에 관한 조문 명시

3.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1) 진단

- 활동, 보호, 복지 분야의 청소년시설과 기관은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종점이며 정책이 청소년과 사회에 도달하도록 하는 최전선임.
-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등이 있음.
- 청소년복지시설(지원기관 포함)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그 설립근거로 삼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이 있음.
- 청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보호법을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있음.
- 각각의 시설이 그 설립근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청소년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가 전문인력으로 고용되어 활동하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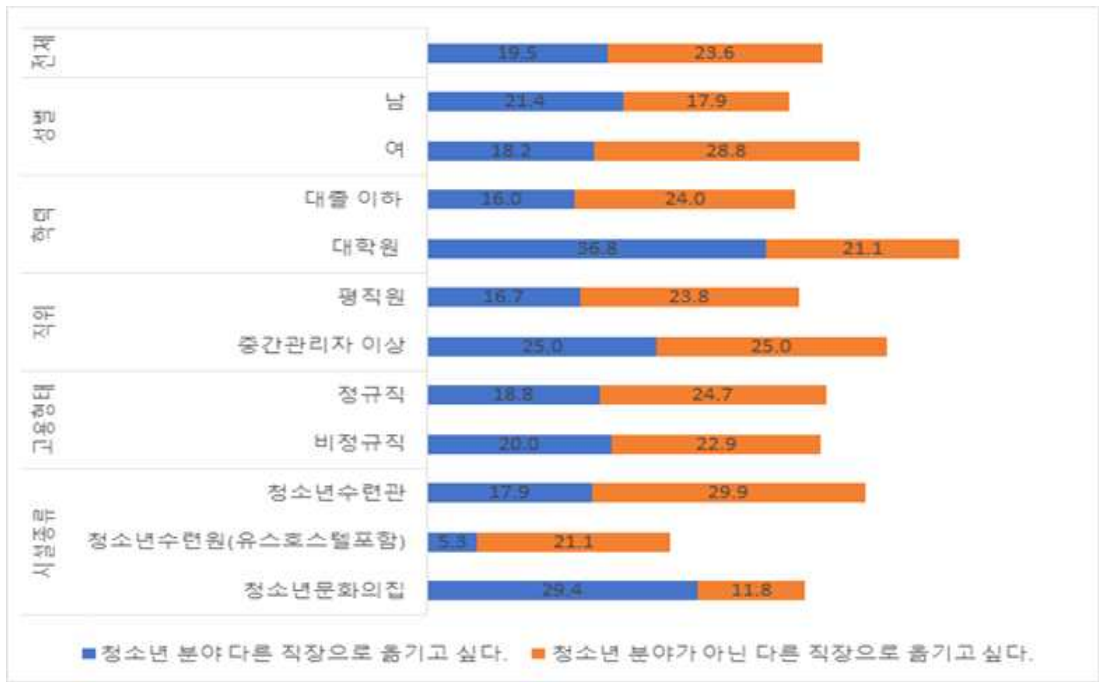
2) 시설운영의 공공성 확보 측면

- 인지도교육 위주로 진행된 공교육이 한계점을 보이면서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며, 학업성적 외의 다양한 요소를 입시에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거 입학사정관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1년(혹은 1학기)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자유학년제(학기제),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을 정규교과에 편입시킨 창의적체험활동 등이 그것임.
- 또한 도입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 등은 교육현장과 청소년의 삶에 큰 변화와 영향을 가져다 줄 중요 변수가 될 것임.

-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의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이에 대응할 방법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0년 확산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른 감염병(코로나-19)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청소년 교육과 성장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던져 주고 있음.
-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주요 과제들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며 이에 따라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 영역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함은 물론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와 더불어 교육, 성장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분야 제 시설이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은 국가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임은 물론 국가 청소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바탕이 될 것임.

3) 종사인력의 공공성 확보 측면

- 청소년관련 분야 종사자는 개별 시설이나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 종사자의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실상은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나 위탁운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안정성을 저해하고 지역별, 시설별, 분야별 임금편차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양질의 청소년분야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직영 혹은 재단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하여 서울과 경기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 열악함은 가중되고 있음.
- 2019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지도자의 43.1%가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23%는 청소년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자 이직 의사

-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표준급여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도 각각 기준들이 제공되고 있음.
-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가 2021년 10월 전국의 231개 수련시설(수련관 85, 문화의집 116, 수련원 13, 야영장 2, 기타 7)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가족부 가이드 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시설은 78개(33.8%),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하는 시설은 34개 (34%), 지자체 별도급여체계를 준용하는 시설은 49개(21.2%), 시설 자체기준에 따르는 시 설은 61개(26.4%)로 나타나고 있음.
- 여가부 기준을 준용하는 시설 중 100%를 적용하는 시설은 11개로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 고 일부만 적용(35개 시설)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32개 시설)하는 것으 로 나타남.
- 공무원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 100% 적용하는 시설은 16개 시설, 일부만 적용 하는 시설이 18개인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별도체계를 준용하는 시설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여가부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경우 가 10개 시설,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경우가 8개 시설,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경우가 31개 시 설인 것으로 나타남.
- 시설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경우가 17개,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경우가 40개 시설,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경우가 4개 시설로 나타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채용자격기준은 석사, 박사 등 고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반면 처우는 유사직종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본급을 비교한 결과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기본급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본급 차이⁴⁾

구분		2021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2021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비교 (급여차이)
기본급	팀원 1호봉	1,945,500	2,138,300	192,800
	팀장 5호봉	2,289,300	2,716,300	427,000
	센터장 10호봉	2,827,100	3,691,200	864,100

- 일반공무원, 여가부 청소년지도사 가이드라인과 비교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일반공무원 기본급 수준에 대한 분야별 급여 비교⁵⁾

구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사	비교
일반공무원 기본급 기준	98% 수준	85% 수준	-13%

- 상담사의 경우도 청소년지도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처우는 높은 이직율로 연결되며,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방해하고 있는 현실임.
- 쉼터의 경우는 적용받는 급여체계가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는 경우(서울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경우(경기도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경우(부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의 일부만 적용받는 경우(이천, 오산, 인천),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만 100%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천안, 춘천, 강릉, 호남) 등이 있음.

4) 제안사항

□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의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 법령의 실천근거 향상을 위한 청소년관련법 개정

4) 각각의 운영지침에서 발췌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II에서 발췌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 급여는 여가부 기준 100% 준용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 ‘~할 수 있다’ → ‘~한다’ 등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의 용어 변경

- 저조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정부예산 반영률 상승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청소년육성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청소년사업 투자 확대

- 청소년정책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예산 확대 편성

□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청소년전문가 운용체계 및 처우 개선

- 청소년분야(활동, 보호, 복지, 상담 등) 종사자에 대한 급여 등 처우의 표준화
- 청소년지도자 처우 관련 법령의 준수

청소년기본법 제 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의 적용 의무화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

청소년 분야 주요 현황

□ 청소년 인구(9~24세): 830만 6천명(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0%)

남자-4,315천명, 여자-3,991천명 [통계청 2021. 5. 21일 기준]

□ 청소년 기관 및 지도자 수

- 학계(학회)

[기준: 2021. 12. 15 현재]

청소년관련학회명	학회원 수
한국청소년학회	4,660명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758명
한국청소년활동학회	750명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230명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80명

- 전공학과 수(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양성 대학 및 학생수)

[출처: 2020. 청소년백서]

양성대학 유형	대학(전공) 수
전문대학	7개
4년제 대학	24개
대학원	38개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8개
계	77개

- 기관(시설 및 단체)

[기준: 2021. 12. 15 현재]

기관	산하 시설(개소수)	총 회원수(지도자, 청소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64개 회원단체	총 2,905,377명 (251,599명, 2,653,778명)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청소년수련관(센터)	193개소 177명
	청소년문화의집	305개소 251명
	청소년수련원	161개소 138명
	유스호스텔	108개소 25명
	청소년야영장	32개소 9명
	청소년특화시설	14개소 12명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	531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238개소	3,479명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145개소	1,160명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10개 지역지부	2,200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17개소	192명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55개소	57명
계	1,342개소	(지도자 259,840명, 청소년 2,653,778명)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학회		
대표자	회장 김청송	연락처	010-2736-2941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총 4,660명 (이사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5명, 운영이사 5명, 감사 2명, 고문 8명, 학회회원 4,638명)		
주소(홈페이지)	www.kyra.or.kr		
기관 소개	한국청소년학회는 연구자 상호간의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자 1991년에 창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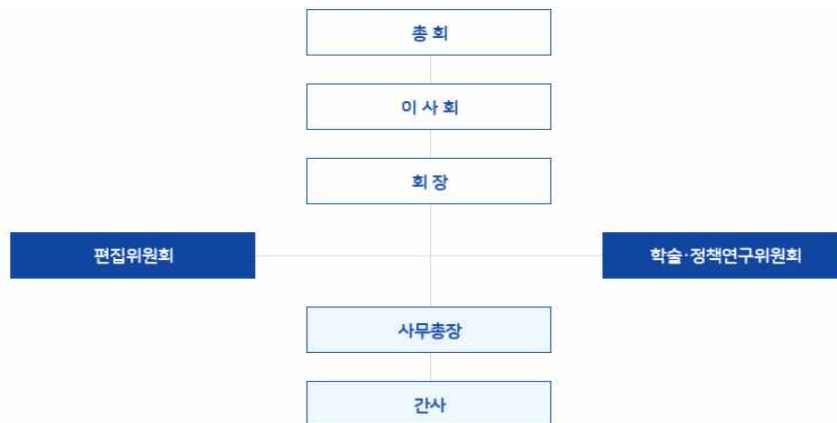
- 설립 목적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류 및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학술단체이다.

- 주요 사업

1. 연구발표회 및 학술연구사업, 학술지 발간
2. 청소년 실태조사
3. 청소년육성 프로그램개발
4. 청소년 지도자육성 개발사업
5.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및 협조
6. 청소년 비행예방 및 보호사업
7. 청소년 교육복지, 활동, 상담복지, 예술문화 등을 위한 기관 위탁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직 및 인력



구분	고문	명예회장	임원		사무국		개인회원		단체회원
			이사	감사	사무총장	간사	전체	정회원	
인원(명)	8	1	12	2	1	2	4,638명	788명	55단체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대표자	회장 오승근	연락처	010-8983-4988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총 758명(고문 8명, 회장 1명, 부회장 5명, 운영이사 13명, 학회이사 88명, 학회 회원 643명)		
주소(홈페이지)	www.f-youth.or.kr		
기관 소개	청소년계 학회를 대표하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는 청소년학과 청소년 관련분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며 2004년 공식 출범한 학술연구단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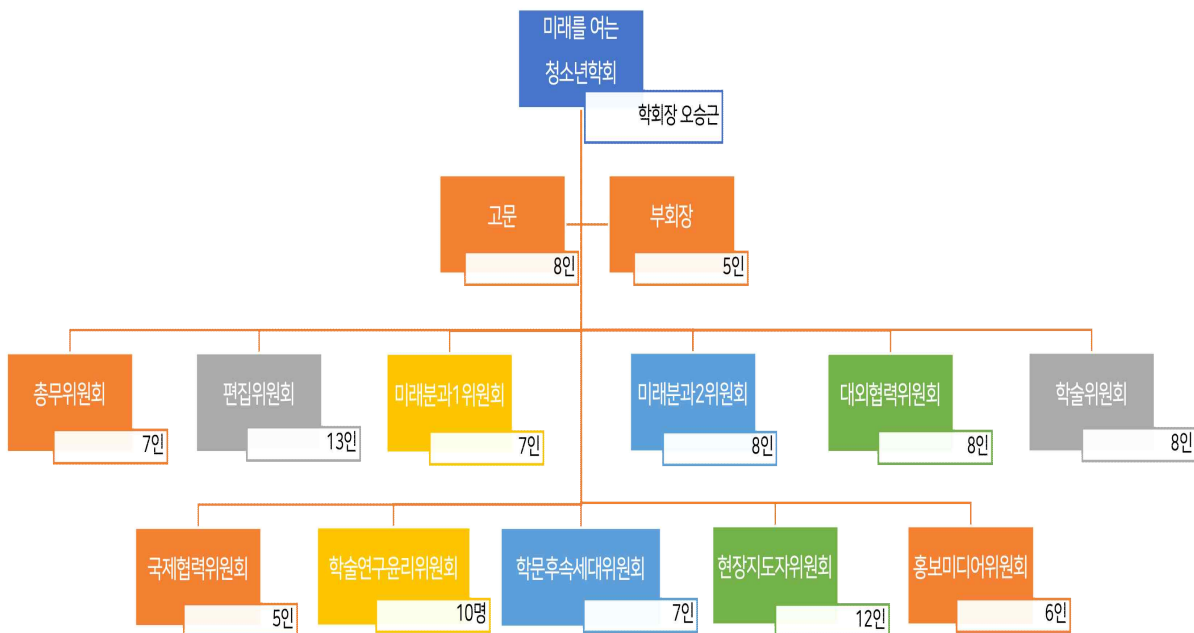
- 설립 목적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는 청소년학과 청소년 관련분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2004년 공식 출범한 학술연구단체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미래청소년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청소년 분야 담론을 형성하고 학문적 토대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주요 사업

미래청소년학회지 논문발간, CLR(학습 및 연구 동아리) 운영, 뉴스레터 발간, 차기 정부 청소년 정책 개발 추진, 춘계/추계 학술대회, 연구윤리교육, 미청포럼(미래를여는청소년연구자 포럼) 및 청소년연구방법론 워크숍 개최, 청소년지도실습 교재 제작 진행

조직 및 인력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활동학회		
대표자	회장 권일남	연락처	010-2971-1518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750 명		
주소(홈페이지)	http://youth2.net/		
기관 소개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목적을 둔 학회		

설립 목적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

1.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교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 및 인력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대표자	회장 정익중	연락처	010-8218-5617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고문 11명, 감사 2명, 회장 1명, 부회장 3명, 운영이사 6명, 학회이사 40명, 학회원 1,230명		
주소(홈페이지)	http://youthwelfare.org		
기관 소개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한국 청소년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 창립한 학술연구단체이다. 학술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복지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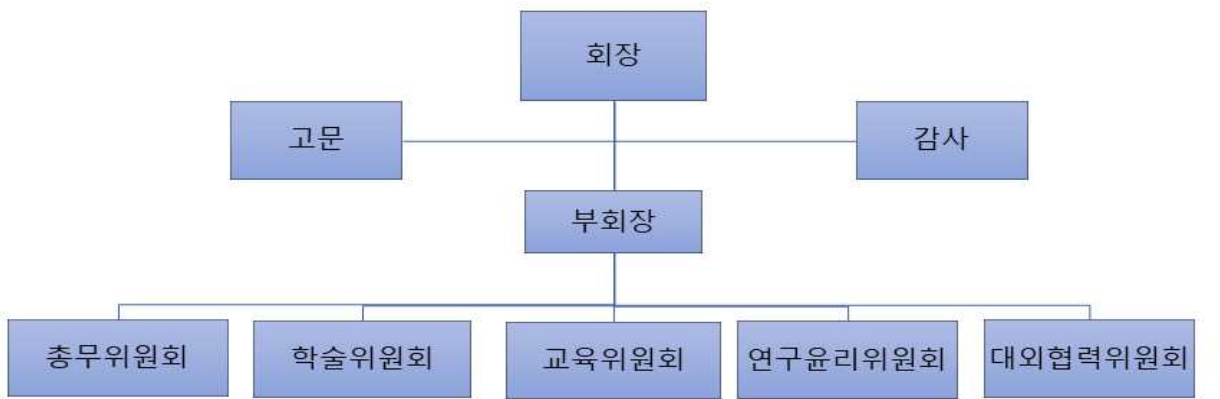
설립 목적

본 학회는 1998년 창립하여 청소년 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 실무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복지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회원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해 청소년 분야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목적을 둔다.

주요 사업

1. 청소년복지학에 관련한 연구 및 조사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대회와 강연회 및 기타 연구발표회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교류 등

조직 및 인력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대표자	유성렬 회장	연락처	010-2358-0914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21개 대학 85명		
주소(홈페이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		
기관 소개	청소년관련학과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관련학과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진로 모색 - 청소년관련학과 공통교육과정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1인 - 부회장 5인 - 운영이사 1인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대표자	회장 배정수	연락처	02) 2088-8893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10개 지부, 2,200명		
주소(홈페이지)			
기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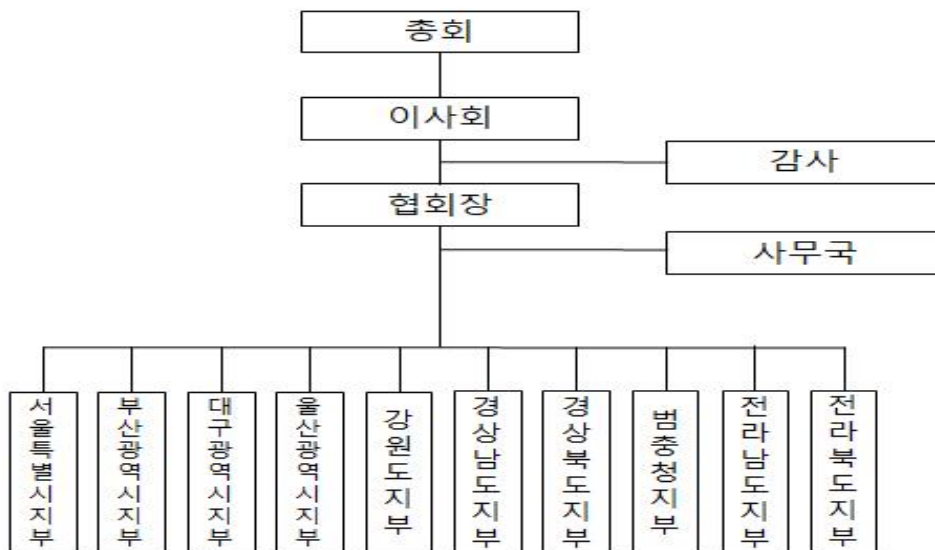
설립 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을 개발·실천하고, 청소년지도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

1. 청소년정책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2. 청소년지도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개발 및 교류·협력 사업
4.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5.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원격교육 관련 사업
6.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사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위·수탁 사업
8. 국내·외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단체 간의 교류·협력 사업
9. 국내·외 청소년지도사(자) 대회 등의 국가 및 국제행사 개최
10. 한국 청소년지도사 공제회 설립 및 운영
11. 협회 운영에 필요한 조사, 연구, 용역, 출판 등의 각종 수익사업

조직 및 인력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대표자	회장대행 김진상	연락처	02-766-9363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612개소 / 8,872명		
주소(홈페이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4, 3층 / www.youthnet.or.kr		
기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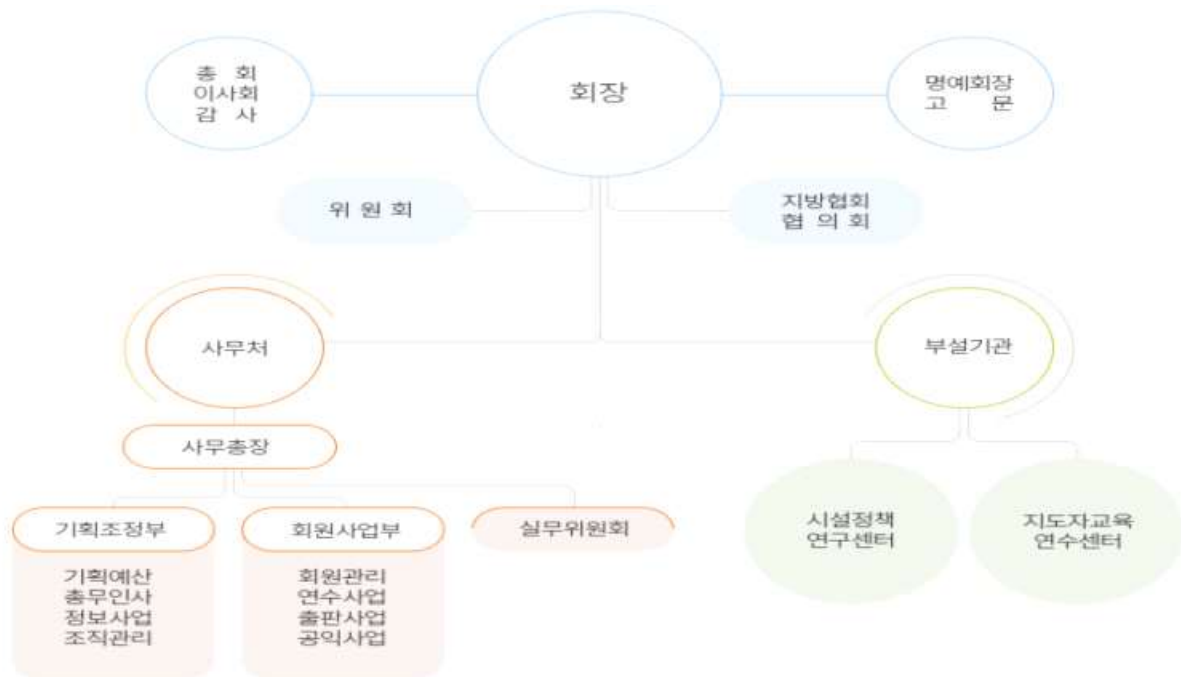
설립 목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전국의 800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 청소년시설의 전문화 및 선진화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사업

- 청소년시설 평가 및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연수사업, 청소년분야 정책사업, 청소년활동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사업, 시설 운영현황조사 사업,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등

조직 및 인력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대표자	회장 권준근	연락처	010-2726-9947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총531명		
주소(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FYW2015		
기관 소개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는 NCS 개발, ISC 사업을 기반으로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권익옹호와 역량강화, 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교육, 연수 사업을 지원하는 청소년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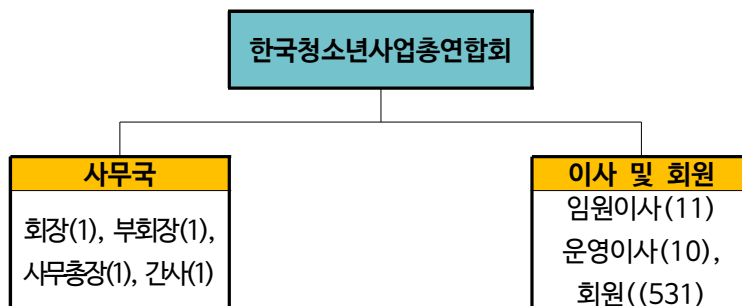
설립 목적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을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상담, 보호, 복지에 관한 전문가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권익옹호와 역량강화 및 지도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됨.

주요 사업

- **청소년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지원**
 - 푸른靑서당
 - 해외 선진지 연수 지원
 - 시도 지역 별 청소년지도자 간담회 개최
 - 일본 전문 청소년지도자가 들려주는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 등
- **예비 청소년지도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청소년지도사의 개념적 자질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 교육

조직 및 인력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심터협의회		
대표자	이사장 고승덕	연락처	010-8769-3520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145개소 / 1,160명		
주소(홈페이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1329호 / www.jikimi.or.kr		
기관 소개			
설립 목적			
<p>가정 밖에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전국 청소년심터 간 교류와 협력, 통합, 중요사안 의견수렴 및 권익 대변,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정책연구, 종사자 교육지원, 나눔지원 등 실천사업 진행</p>			
주요 사업			
<p>정책사업, 교육연구사업, 조직활성화사업, 나눔사업, 지원사업, 공모사업, 특별사업, 홍보사업</p>			
조직 및 인력			
<pre> graph TD A[총회(전국 회원 심터, 자립지원관)] --- B[이사회] B --- C[이사장(고승덕)] C --- D[회 장(마재순)] D --- E[유형별 분과 (일시, 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E --- F[사무국(사무국장, 간사)] E --- G[사안별 분과(직책이사) (정책, 교육, 연구, 사업, 재무)] E --- H[전국 6개 지부] </pre>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대표자	회장 이미원	연락처	041-622-1388(사무국)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238개 센터, 3,479명(시간제 포함)		
주소(홈페이지)	https://www.cheonan.go.kr/teen.do (사무국)		
기관 소개	<p>「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전국 23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 청소년상담사의 권익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큼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p>		
설립 목적			
전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 교류와 협력, 청소년상담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증진 도모			
주요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2. 청소년 상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세미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인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예방 및 해결 역량을 제고 3. 청소년 상담복지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정책 현황 검토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 제안 4. 청소년 상담복지 기관 간 교류·협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5. 학교밖청소년 지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교류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조직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이미원(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임원 및 이사: 38명 3. 협의회 소속 센터: 238개 센터 4. 종사자 수: 3,479명(시간제 포함)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대표자	회장 이익선	연락처	010-6422-1090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17개 기관 / 192명		
주소(홈페이지)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3 흥사단회관 2층 / www.gjcenter.net		
기관 소개	·1997년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4조 10호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2007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설립 목적			
청소년활동 서비스의 원활한 전달-교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수요자 중심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및 전국 기반의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 발전 추진(17개 시도에 설치)			
주요 사업			
○지역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및 맞춤형 직무교육 ○청소년수련시설 기관운영·사업수행·시설관리·수련시설 종합평가 등 컨설팅 지원 ○지역 청소년정책 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청소년정책 사업(자원봉사·수련활동인증제·안전 및 신고제 등) ○청소년참여 사업(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동아리연합회 지원 등)			
조직 및 인력			
<pre> graph TD A[회장 : 이익선] --- B[수석부회장 : 지경호 부회장 : 허신도, 김의숙] B --- C[17개 센터] B --- D[감사 : 강옥련, 조주환] B --- E[사무총장 : 문수영] </pre>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자	이명화 상임대표 이동진 공동대표	연락처	02-3144-1223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55개소		
주소(홈페이지)	04031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68(서교동 376-11) 3층 https://www.facebook.com/cseofkorea		
기관 소개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협의체로 회원 단체 간 상호 협력과 종사자 역량강화 및 법적 제도적 기반을 위한 다양한 성문화 활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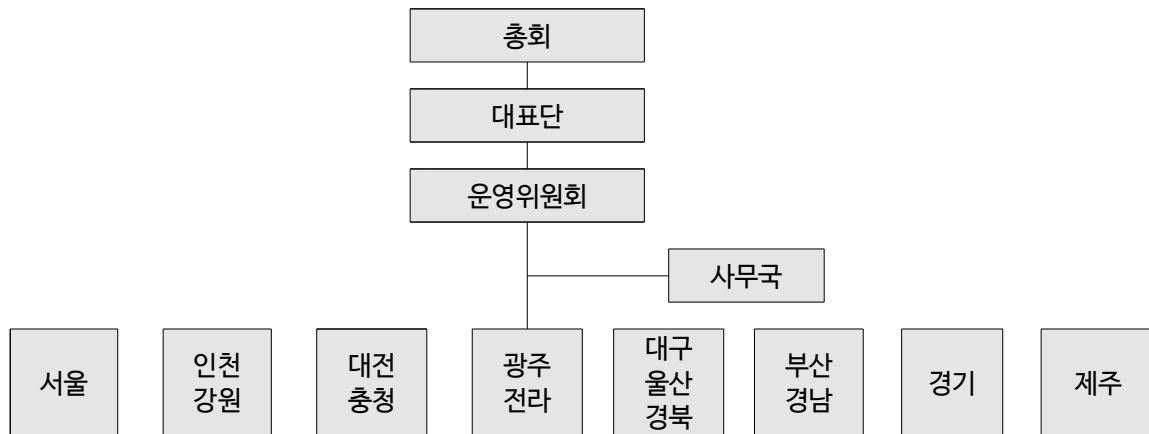
설립 목적

- 성인지적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 역량강화와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상호 협력·지원 기능 수행

주요 사업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월례포럼, 신규 종사자, 매뉴얼 워크숍 등)
- 네트워크 사업(직급별 네트워크, TF팀 등)
- 성문화 활동
- 청소년성문화센터 공동 홍보 및 대외활동
- 성교육 연구 사업 등

조직 및 인력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고정형	8	3	2	2	2	1	1	6	3	2	2	4	4	3	2	2	47
이동형	0	2	·	·	·	·	·	3	1	1	1	·	·	1	1	·	10
계	8	5	2	2	2	1	1	9	4	3	3	4	4	4	3	2	57

※ 상임대표 1인, 공동대표 1인, 감사 1인, 운영위원 7인, 사무국 1인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

기관명 (학회, 시설, 단체)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대표자	박옥식 이사장	연락처	010-4337-4148
가입 단체 및 회원 수	협력기관 585개 / 2,019명		
주소(홈페이지)	www.kmcyouth.or.kr		
기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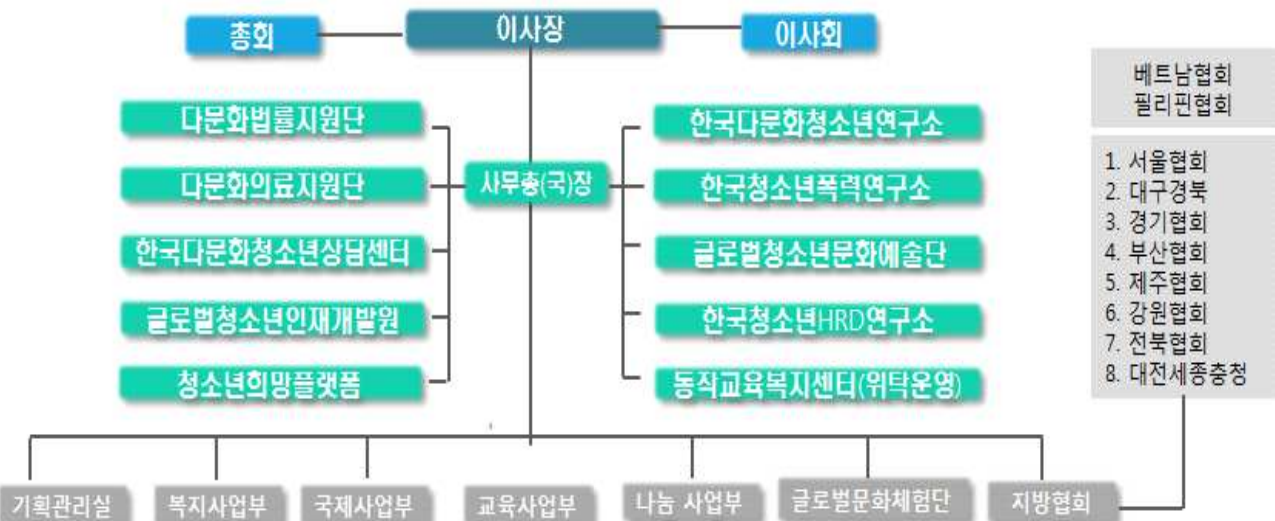
설립 목적

- 글로벌시대 다문화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
-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서 창조적인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역량 함양 및 글로벌인재로 성장 지원

주요 사업

- | | | |
|---------------|-----------------|---------------------|
| - 청소년복지사업 | - 청소년교육사업 | - 청소년상담사업 |
| - 법률 및 의료지원사업 | - 연구사업 | - 글로벌문화교류사업 |
| - 글로벌자원봉사활동사업 | - 글로벌 프로그램 개발사업 | - 청소년시설 및 기관 위탁운영사업 |
| - 출판홍보사업 | - 평생교육시설운영사업 | - 기타 다문화청소년 관련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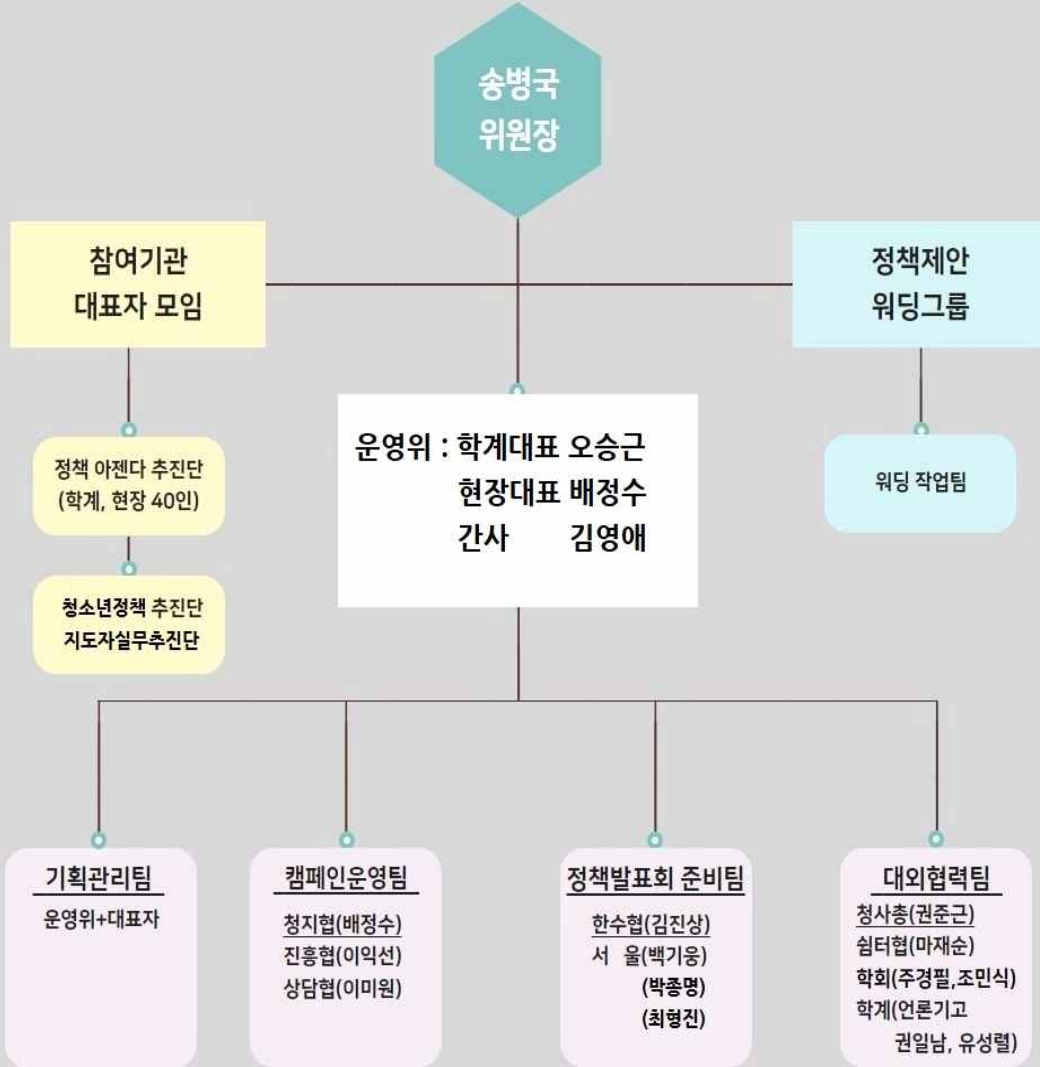
조직 및 인력



구 분	서울	경기	부산/동부산	대전충청세종	강원	전북	대구경북	베트남	필리핀	계
인원	18	2	5	2	2	2	3	2	2	38

범청소년계 조직 및 참여 현황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참여기관(학회 및 시설, 단체) 명단

- 학계 :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 현장 :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한국청소년심터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범청소년계 조직 및 참여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추진단 및 워킹그룹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2		오승근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회장
3		배정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회장
4		유성렬	청소년관련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5		김호순	한국청소년학회	수석부회장
6		정익중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7		권일남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회장
8		김진상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 대행
9		마재순	한국청소년신포럼협의회	회장
10		이익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회장
11		이미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12		권준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
13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회장
14		박옥식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회장
15		김민	한국청소년학회	부회장
16		한도희	한국청소년학회	서대문 관장
17		조남역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부회장
18		김기남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부회장
19		주경필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대외협력위원장
20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편집위원장
21		조영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교수
22		윤나랑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편집국장
23		김영애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사무국장
24		이형덕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관장
25		백기웅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서울협의회장
26		서영옥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관장
27		정진해	한국청소년신포럼협의회	부회장
28		문수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사무총장
29		김형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자문위원
30		김보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고문
31		유혜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서울센터장
32		이승렬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부회장
33		하중래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사무총장
34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35		조미란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이사
36		조민식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이사

37	지도자 실무추진단	박종명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국장 (실무위원장)
38		최형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문래 소속)	사무처장 (실무위원)
39		김유진	문래청소년센터	담당실무 (실무위원)
40		이건희	창동 청소년센터	팀장 (실무위원)
41		김영조	노원 청소년센터	청소년사업팀장 (실무위원)
42		오형철	방배 유스센터	팀장 (실무위원)
43		유지원	서울 청소년문화교류센터	팀장 (실무위원)
44		이상진	상계 청소년문화의집	팀장 (실무위원)
45		변가혜	강북청소년센터	부장 (실무위원)
46		김보성	강북청소년센터	담당 (실무위원)
47		이소라	성북청소년센터	팀장 (실무위원)
48		강슬기	은평청소년문화의집	팀장 (실무위원)
49		윤선해	강북청소년센터	팀장 (실무위원)
50		오진석	안산시평생학습관	선임연구원
51	청소년 정책추진단	한지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세 (청소년정책추진단)
52		윤태경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19세 (청소년정책추진단)
53		나홍준	서초유스센터 #스마트1열 동아리	20세 (청소년정책추진단)
54		전예은	서초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16세 (청소년정책추진단)
55		안희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17세 (청소년정책추진단)
56		한동현	공주시청소년꿈창작소청소년운영위원회	17세 (청소년정책추진단)
57		김해교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22세 (청소년정책추진단)
58		박건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20세 (청소년정책추진단)
59		권민지	새롬청소년운영위, 아동청소년참여위원장	19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0		조성원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기획팀, 사) 커넥션	18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1		이정현	새벽별 사회적협동조합	22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2		박수연	성동청소년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22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3		김준우	덕원중학교	16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4		황유진	문래청소년센터 대학생환경서포터즈'그린나래'	22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5		배준서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20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6		송우석	문래청소년센터청소년환경기자단이크에코	21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7		이연우	순천향대학교	21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8		김인혜	문래청소년센터 대학생환경서포터즈'그린나래'	22세 (청소년정책추진단)
69		김선우	시립문래청소년센터 그린나래	20세 (청소년정책추진단)
70		서영서	낙생고등학교	19세 (청소년정책추진단)
71		유환	서울국제고등학교	18세 (청소년정책추진단)
72		이사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세 (청소년정책추진단)